

##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정 1982. 3. 1.  
29차 개정 2017. 2.15.  
소관부서 교직원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부)의 학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6.10.10.>

**제2조(교직과정설치 학과(부) 및 승인정원)** 교직과정 설치학과(부) 및 승인정원은 교육부장관의 교직과정설치 승인에 의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20., 2015.2.10., 2016.2.5., 2017.2.15.>

**제3조(교원양성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4.14., 2009.5.22.>

**제4조(교직과정 이수신청)** ①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별표 2의 교직과목이수과정표에 따라 2학년 1학기부터 해당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7.2.15.>

②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초 또는 2학년 2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교직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5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별표 1의 승인정원 내에서 2학년 말에 제4조에 의한 신청자 중 1·2학년 전 과정(수료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우선으로 하여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필기 및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인성·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4.7.>

② 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3학년 1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한다.

**제6조(이수학점)** ①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별표 2의 교직과목이수과정표에 따라 2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2009.5.22., 2015.2.10.>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7.>

③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별표 3에 규정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지정과목(이하 “기본이수과목”이라 한다)을 7과목(21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2015.2.10., 2016.2.5., 2016.10.10., 2017.2.15.>

④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소속 학과(전공)의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전공의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2016.10.10.>

⑤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과목 외에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성적과 기타 요건)** ①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그 성적이 다음의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2.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②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15.>

③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

설 2016.10.10.>

[전문개정 2014.5.20.] [조 제목 변경 2014.5.20., 2016.10.10.]

**제8조** 삭제 <2009.4.7.>

**제9조(교직복수전공 이수)** ① 사범대학생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사범대학의 다른 학과 또는 다른 교직과정설치학부(전공)를 교직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학과 또는 학부(전공)의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중에는 복수전공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2017.2.15.>

③ 교직복수전공의 이수 신청은 소정의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④ 교직복수전공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그 성적이 다음의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1.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2.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⑤ 주전공 교직심사에서 결격한 경우 교직복수전공은 이수가 불가하다. <신설 2016.10.10.>

⑥ 사범대학 학과의 복수전공이수는 교직복수전공으로만 인정하며, 사범대학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자가 주전공 교직심사에서 결격하는 경우 복수전공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6.10.10.>

**제10조(연계교육과정 이수)** ① 연계교육과정이라 함은 주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다른 표시과목(기술·가정, 통합사회)의 교원자격을 복수로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2.15.>

②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해당 주전공의 교원자격 표시과목은 ‘가정’, ‘역사, 일반사회’ 표시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7.2.15.>

③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연계교육과정 이수과목표에 따라 해당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016.2.5., 2017.2.15.>

④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 3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중에는 연계교육과정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7.>

**제11조(교직과정 이수포기)** ① 사범대학생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중도에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직과정이수포기원을 교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범대학생의 교직이수포기원 제출기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②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 중도포기자가 이미 취득한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은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10.10.>

**제12조(교육실습)** ①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으로 편성되며 본교의 전체 교직이수예정자에게 적용된다.

② 학교현장실습은 3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1학기 중 4주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4.7, 2012.4.30.>

③ 교직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교직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한다. <개정 2009.4.7.>

④ 교육봉사활동은 2학점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교육봉사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봉사활동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9.9.28]

**제13조(실습경비)** 학교현장실습 및 산업체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9.28.>

**제14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자는 4학년 2학기말(후기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는 6월중) 소정의 기간 중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직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15조(학적변동자 교직이수 기준)** 복학생의 교직이수 기준(이수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등)은 입학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재입학생은 재입학한 학년의 해당 입학학년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5.20.>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2조의 자연과학대학 전산통계학과와 공과대학 기계공·기계설계·전기공·전자공·전자계산·토목공·건축공·화학공학과 및 산업공학과는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3조는 1993학년도 교육실습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2조의 문과대학 노어노문학과, 자연과학대학 산업디자인학과는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8조는 1993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4조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9조, 제14조의 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적용하며, 제10조의 규정은 1996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제13조제2항은 1997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적용하며, 제5조, 제7조제2항은 1999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6조제3항은 1997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제9조제1항은 1998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제4조, 제5조는 1999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은 2000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직과정운영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0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2. 이 규정 시행당시 1999학년도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3년 8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대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이수학점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지된 ‘공업’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산업공학전공’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3. 이 규정 제8조제2항에 불구하고 2000학년도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4년 8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이 규정 제10조의 적용은 교육학과 및 가정교육과의 경우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인문학부 철학전공의 경우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불구하고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2006년 8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규정 제15조의 적용에 있어서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졸업결격자 및 졸업연기자는 예외로 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제10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통사회 및 공통과학 연계교육과정 이수인 경우 2002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5조제1항은 2008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4.14.)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중 제12조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 중 제5조1항 및 제8조는 2008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적용한다.

3. 이 규정 중 제6조1항,2항,3항,4항, 제7조, 제9조, 제10조는 2009학년도 입학해당자부터 적용한다.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5.22.)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12조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2.17.)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2조제2항 중 학교현장실습 시기는 교육학과·일어교육과·음악교육과 및 교직설치학부(과)는 4학년 1학기에 실시하고 이를 제외한 사범대학 소속 학과는 3학년 1학기에 실시하되,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으로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13.5.2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중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4항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규정 중 제7조 제2항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10.)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5.)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7조제3항은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2017년 2월 졸업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2017.2.1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7조제2항은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직과정설치학과 학생의 경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같은 연도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승인 정원표(제2조 관련)**

〈2017학년도 입학해당자 기준〉

대학	설치학과(전공)		표시과목	승인정원
문과 대학	역사학과	역사학전공	역사	4
	중국학과	중국학전공	중국어	5
	심리학과	심리학전공	전문상담교사(2급)	4
	사회학과	사회학전공	일반사회	2
건강과학 대학	식품영양생명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영양교사(2급)	4
경상 대학	경제금융학과	경제금융학전공	일반사회	2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상업정보	1
		회계학전공		3
법정 대학	법학과	법학전공	일반사회	3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일반사회	2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전공	일반사회	3
공과 대학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기계·금속	2
		기계로봇설계공학전공	기계·금속	2
	전기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기·전자·통신	2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정보·컴퓨터	4
<b>계</b>				<b>43</b>



[별표 2]

**교직과목 이수 과정표(제4조제1항 관련)**

■ 사범대학 : 국어, 영어, 수학, 체육교육과

영역	교과목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1	2	1	2	1	2	1	2	
교직이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16
	교육사회		2							
	교육학개론	2								
	교육심리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평가				2					
	교육과정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6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
	교육봉사활동							2		
계		8		8		8		2		26

※ 교직이론과목 8과목 중 6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교직이론 및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명칭, 학점 및 개설시기가 위 표와 다를 수 있음

[별표 2]

**교직과목 이수 과정표(제4조제1항 관련)**

■ 사범대학 : 유아, 일어, 가정, 과학, 미술, 음악교육과

영역	교과목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1	2	1	2	1	2	1	2	
교직이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16
	교육사회	2								
	교육학개론		2							
	교육심리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평가			2						
	교육과정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6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
	교육봉사활동							2		
계		8		8		8		2		26

※ 교직이론과목 8과목 중 6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교직이론 및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명칭, 학점 및 개설시기가 위 표와 다를 수 있음

※ 교육학과, 일어교육과, 음악교육과, 유아교육과는 학교현장실습을 4학년 1학기에 실시함

[별표 2]

**교직과목 이수 과정표**(제4조제1항 관련)

■ **교직설치학과**

영역	교과목명	2학년		3학년		4학년		계
		1	2	1	2	1	2	
교직이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16
	교육사회	2						
	교육학개론		2					
	교육심리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평가			2				
	교육과정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6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
	교육봉사활동						2	
계		8		14		4		26

※ 교직이론과목 8과목 중 6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교직이론 및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명칭, 학점 및 개설시기가 위 표와 다를 수 있음

[별표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과목 일람표(제6조제3항 관련)

학부(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교육부 고시)	지정과목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역사학과 (역사학)	역사	(1) 역사교육론 (또는 사회교육론)	역사교과교육론	3	3/1	6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1)-(6)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이상 이수	
		(2) 역사학방법론 (역사학개론, 사료강독)	역사학개론	3	1/1		
		(3) 분야사 (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한국사상사특강	택1 이상	3		2/2
			사학사특강		3		4/2
		(4) 한국사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고대사	택1 이상	3		2/1
			한국중세사		3		2/2
			한국근대사		3		3/1
		(5) 세계사 (동아시아고대사, 동아시아중세사, 동아시아근세사, 동아시아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동아시아근대사	택1 이상	3		3/1
			서양근대사		3		2/2
		(6) 현대사 (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한국현대사	택1 이상	3		4/1
			동아시아현대사		3		3/2
			서양현대사		3		3/2
중국학과	중국어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교과교육론	3	3/1	7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학개론	3	2/1		
		중국어문학개론	중국어문학개론	3	3/1		
		중국어문법	중국어문법	3	3/2		
		중국어회화	중국어회화	3	2/1		
		한문강독	한문강독	3	1/1		
		중국어권문화	중국어권문화	3	4/2		
사회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관계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일반 사회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사회교과교육론	3	3/1	7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정치와사회	3	1/1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사회학개론	3	1/1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경제학원론 I	3	1/1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문화와사회	3	2/1		
		법과사회(또는 법학)	법학원론	3	1/1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행정학개론	3	1/1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 I	3	1/2				

[별표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과목 일람표(제6조제3항 관련)

학부(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교육부 고시)	지정과목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심리학과 (심리학)	전문상담 교사(2급)	심리학개론	심리학개론	3	1/1	7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심리검사	심리검사	3	3/1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3	2/1		
		집단상담	집단상담	3	4/1		
		진로상담	진로상담	3	3/2		
		상담이론과실제	상담이론과실제	3	2/2		
		심리치료 (또는 임상심리학)	임상심리학	3	3/2		
		학습심리학	학습심리학	3	2/2		
이상심리학	이상심리학	3	3/1				
식품영양생명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영양교사 (2급)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상담실습	택1	3	3/1	5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1,4,5)분야에서 1과목 이상 (2,3)분야에서 2과목 이상
		(2)영양학	영양학	택2 이상	3	2/1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	3/2	
		(3)단체급식및실습	단체급식관리및실습	택2 이상	3	3/2	
		식품위생학	식품위생및법규		3	3/1	
		(4)영양판정및실습	영양판정및실습	택1 이상	3	3/1	
		식사요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3	3/2	
		(5)식품학	식품학	택1 이상	3	1/2	
조리원리및실습	조리원리및실습	3	2/1				
경영학부 (경영학) (회계학)	상업	(1)상업교육론	상업교과교육론	필수	3	3/1	(1)분야 필수 (2)-(6)분야에서 각 1과목이상, 총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상업교과교재 연구법 및 지도법	필수	3	3/2	
		(2)경제학원론	경제학원론 I		3	1/1	
		상업경제					
		(3)회계원리	회계원리		3	1/1	
		회계이론					
		세무회계	세무조정실제	3	3/1		
		(4)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	3	1/1		
		마케팅관리론	마케팅관리	3	2/2		
		재무관리	재무관리	3	2/2		
(5)무역학개론	무역학원론		3	1/2			
무역영어							
무역실무	무역실무	3	2/1				
(6)회계정보처리론	전사적자원관리		3	2/2			
전사적 자원관리(ERP)							

[별표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과목 일람표(제6조제3항 관련)

학부(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교육부 고시)	지정과목	학점	학년 학기	비고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 (기계로봇설계공학)	기계	(1)공업교육론,기계공작법	공업교과교육론	필수	3	3/1	(1)분야 필수 (2)-(6)분야에서 각 1과목이상, 총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기계공작법 I	필수	3	2/2	
		(2)기계설계,재료역학	기계요소설계		3	3/2	
			유체역학		3	2/1	
		(3)유체역학,유체기계	유체기계		3	3/1	
			열역학 I		3	2/2	
		(4)열역학,자동차공학	자동차공학		3	3/2	
			메카트로닉스기초이론		3	2/1	
		(5)전자기계, 제어공학	자동제어		3	3/1	
			(6)정밀공작법,기계재료,기계제도, 기계가공, 용접공학	기계공작법 II		3	
기계재료학		3		2/1			
기계제도및CAD기초		3		1/2			
전기공학과	전기	(1)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일반, 전기자기학	공업교과교육론	필수	3	3/1	(1)분야 필수 (2)-(4)분야에서 각 1과목이상, 총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전기공학개론 I	필수	2	1/1	
			회로이론 I	필수	3	2/1	
			전자기학 I	필수	3	2/1	
		(2) 전기기기, 제어공학	전기기기 I		3	3/1	
			제어공학 I		3	3/1	
		(3) 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전력공학 I		3	3/1	
			전력전자 I		2	3/1	
		(4) 전기설비및법규, 전자공학, 전기전자실습	전기설비시스템		2	4/1	
			전기공학실험 I		1	2/1	
			전기공학실험 II		1	2/2	
			전기공학실험 III		2	3/1	
				전기공학실험 IV		2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정보·컴퓨터	(1)컴퓨터(정보)교육론, 프로그래밍	상업교과교육론	필수	3	3/1	(1)분야 필수 (2)-(6)분야에서 각 1과목이상, 총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C프로그래밍기초및실습	필수	3	1/2	
		(2)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알고리즘		3	2/2	
			이산수학		3	2/1	
		(3)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구조		3	2/1	
			데이터베이스		3	3/1	
		(4)운영체제, 네트워크	운영체제		3	3/2	
			컴퓨터네트워크		3	3/1	
		(5)컴퓨터구조, 논리회로	컴퓨터구조		3	2/2	
			논리회로및실습		3	2/1	
(6)정보통신윤리, 소프트웨어공학	공학윤리		2	1/1			
	소프트웨어공학		3	3/2			

[별표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과목 일람표(제6조제3항 관련)

학부(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교육부 고시)	지정과목	학점	학년 학기	비고	
교육학과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2	1/1	7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교육심리	교육심리	2	1/1		
		교육철학	교육철학및교육사	2	1/1		
		교육사회학	교육사회	2	1/2		
		교육과정	교육과정	2	2/1		
		교육평가	교육평가	2	2/2		
		교육행정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2/2		
		교육공학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1		
		평생교육	평생교육론	3	2/1		
		교육정책론	교육정책론	3	4/2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2급 )	유아교육론	유아교과교육론	3	2/1	7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3	2/2		
		유아놀이지도	유아놀이지도	3	2/1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관찰및실습	3	1/2		
		유아언어교육	유아언어교육	3	3/1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3	3/1		
		유아과학교육	유아과학교육	3	3/1		
		유아수학교육	유아수학교육	3	2/2		
		유아음악교육	유아음악교육	3	2/1		
		유아동작교육	유아동작교육	3	3/2		
		부모교육	부모교육	3	3/2		
		아동복지	아동복지	3	4/1		
		유아교사론	유아교사론	3	4/1		
		유아건강교육	아동건강교육	3	3/1		
국어교육과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3	1/2	5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이상 이수	
		(2)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	택2	3		1/1
			국어문법론		3		2/2
			국어사		3		4/1
		(3)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	택2	3		1/1
			국문학사		3		3/2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시가교육론, 희곡교육론, 수필교육론)	소설교육론	택1	3		2/1
			시가교육론		3		3/1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이해교육론		3	2/1			

[별표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과목 일람표(제6조제3항 관련)

학부(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교육부 고시)	지정과목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영어교육과	영어	영어교육론	영어교과교육론	3	3/2	7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	3	2/1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	3	3/2		
		영어문법	영어문법	3	2/1		
		영어회화	영어회화	3	1/2		
		영어작문	영어작문	3	2/1		
		영어독해	영어독해	3	1/1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음운론	3	3/1		
		영미문화	영미문화	3	2/2		
일어교육과	일본어	일본어교육론	일본어교과교육론	3	3/2	7분야,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개론	3	3/1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개론	3	3/1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	3	2/1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 I	2	2/2		
			일본어회화 II	2	3/1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	3	2/1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연습	2	1/2		
		일본문화	일본문화	3	2/2		
가정교육과	가정	(1)가정교육론	가정교과교육론	3	2/1	7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1)-(7)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이상 이수	
		(2)영양학, 식품과조리	영양학	택1 이상	3		1/2
			식품과조리	3	2/1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의복재료와관리	택1 이상	3		2/1
			의복디자인과구성	3	1/2		
		(4)주거학, 실내디자인	주거학	택1 이상	3		3/1
			실내디자인	3	1/2		
		(5)가정경영, 소비자학	가정경영	택1 이상	3		3/2
소비자학	3		1/2				
(6)아동학, 가족학	가족학	3	1/1				
(7)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과진로	가정생활문화	3	2/1				
수학교육과	수학	수학교육론	수학교과교육론	3	3/2	7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정수론	정수론	3	2/1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I	3	3/1		
		해석학	해석학 I	3	2/1		
		선형대수	선형대수학	3	2/2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 I	3	3/2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 I	3	3/2		
		기하학일반	기하학일반	3	1/2		
		위상수학	위상수학 I	3	2/2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 I	3	4/1		



[별표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과목 일람표(제6조제3항 관련)

학부(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교육부 고시)	지정과목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체육교육과	체육	체육교육론	체육교과교육론	3	3/1	7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사회학	3	3/2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	3	3/2	
		운동역학	운동역학	3	3/1	
		체육측정평가	체육측정평가	2	2/2	
		건강교육	건강교육	3	1/2	
		특수체육	특수체육	2	1/2	
		운동학습및심리	운동학습및제어	2	3/2	
			스포츠심리학	3	3/1	
		여가레크리에이션	여가레크리에이션	2	4/2	
		체육사·철학	체육사	3	2/1	
			체육철학	2	1/2	
		무용교육	교육무용	1	2/2	
		운동실기	육상경기 I	1	1/1	
			체조 I	1	1/2	
수영 I	1		1/1			
미술교육과	미술	미술교육론	미술교과교육론	3	2/1	7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현대미술론	현대미술론	2	3/1	
		소묘	소묘	2	1/1	
		색채학	색채학	2	1/2	
		한국화	한국화	2	1/2	
		서양화	서양화	2	1/2	
		조소	조소	2	1/2	
		공예	공예	1	1/1	
		디자인	디자인	2	2/1	
		판화	판화	2	2/2	
		표현기법	표현기법	1	1/2	
		서예	서예	1	2/1	
		영상	영상	2	2/2	
		미술사	한국미술사	2	2/1	
			동양미술사	2	3/1	
서양미술사	2		1/2			

[별표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과목 일람표(제6조제3항 관련)

학부(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교육부 고시)	지정과목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음악교육과	음악	음악교육론	음악교과교육론	3	2/1	7분야,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음악교수법	음악교수법	2	2/2		
		전공실기	전공실기 I	택1	1		1/1
			전공실기 II		1		1/2
			전공실기 III		1		2/1
			전공실기 IV		1		2/2
			전공실기 V		1		3/1
			전공실기 VI		1		3/2
			전공실기 VII		1		4/1
			전공실기 VIII		1		4/2
		화성법	화성법 I	택1	2		2/1
			화성법 II		2		2/2
		시창·청음	시창청음 I	택1	1		1/1
			시창청음 II		1		1/2
			시창청음 III		1		2/1
		국악개론	국악개론 I	택1	2		2/2
			국악개론 II		2		3/1
		국악실기	국악실기 I	택1	1		2/1
			국악실기 II		1		2/2
		국악가창지도법	국악가창지도법	1	3/2		
		국악사	국악사	2	3/2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 I	택1	2		1/1
			서양음악사 II		2		1/2
		합창·합주지도법	합주지도 I	택1	2		2/1
			합주지도 II		2		2/2
			합주지도 III		2		3/1
			합주지도 IV		2		3/2
			합주지도 V		2		4/1
			합주지도 VI		2		4/2
			합창지도 I		2		2/1
합창지도 II	2		2/2				
합창지도 III	2		3/1				
합창지도 IV	2		3/2				
합창지도 V	2		4/1				
합창지도 VI	2		4/2				
음악분석및형식론	음악분석및형식론	2	4/1				
장구반주법	장구반주법	1	3/1				
피아노반주법	피아노반주법	1	2/1				

※ 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과목 일람표는 2017학년도 입학해당자 기준임(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일람표를 적용함).

[별표 4]

연계교육과정 이수 과목표(기술·가정)(제10조제3항 관련)

※ 2017학년도 입학해당자 기준

주전공	표시 과목	교과교육영역과목	기본이수영역과목		관련전공과목	연계전공 인정과목
가정	기술·가정	가정교과교육론 (3학점)	(1)	가정교육론 (=가정교과교육론)(필수)	기계재료학	영양학
		가정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 (3학점)	(2)	① 기계공작법 I 기계제도 및 CAD기초 (택1)	기계요소설계	식품과조리
		가정교과논리 및 논술 (2학점)		② 건축의 이해 토목공학개론 (택1)	건축일반구조	의복재료와관리
				③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택1)	건축구조의 이해	의복디자인과구성
				④ 컴퓨터개론 전기자기학 전기공학개론 (택1)	통신이론	주거학
				⑤ 생명기술기초 (필수)	운영체제	실내디자인
			(3)	① 영양학 식품과조리 (택1)	전자회로 I	가정경영
				② 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택1)	메카트로닉스	소비자학
				③ 주거학 실내디자인 (택1)	멀티미디어개론	가족학
				④ 가정경영 소비자학 (택1)	건설경영	가정생활문화
				⑤ 가족학	역학개론	
				⑥ 가정생활문화	한국건축사	
					프로그래밍기초및실습	
					데이터통신	
					회로이론I	
					나노공학개론	
					(자유선택)	(5과목15학점)

- ※ 연계전공인정과목이란 ‘주전공의 전공과목’ 과 ‘연계전공의 전공과목’ 을 중복하여 인정하는 과목을 의미하며, 5영역 15학점에 한함.
- ※ 연계복수전공이수자 중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이 주전공 교과교육영역과 동일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교과교육영역의 과목 8학점과 기본이수영역과목 중 교육론과목은 5과목 15학점 중복인정학점에 포함되지 않고, 복수전공 이수학점(50학점)에도 포함되지 않음.
- ※ 가정전공자는 기술 기본이수영역에서 각 영역 택1 하되 7과목 18학점이상이수, 관련전공과목17학점 이상 이수해야함.
- ※ (1)분야에서 1과목, (2)의 ①~⑤와 (3)의 ①~⑥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되, 가정 전공은 기술분야에서, 기술 전공은 가정분야에서 각각 35학점 이상 이수
- ※ 위 연계교육과정 이수과목표는 2017학년도 입학해당자 기준임(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일람표를 적용함).

[별표 4]

연계교육과정 이수 과목표(통합사회)(제10조제3항 관련)

주전공	표시 과목	교과교육영역과목	기본이수영역과목	관련전공과목		연계전공 인정과목
경제 금융학	통합 사회	사회교과교육론 (3학점)	사회교육론 (=사회교과교육론)(필수)	한국경제론 사회적협동경제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헌법 I 민사소송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재무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인사행정론 행정책임과윤리 지방자치의 이해 한국민주주의론 국제관계론 북한정치론 비교정치론 정치과정론 가족과 사회 사회변동과 발전 교육사회학 과학기술과환경 공간과환경	일반사회영역의 기본이수과목 중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과목은 일반사회 자 격증의 기본이수과목 이므로 통합사회와 중복인정하지 않음	한국경제론 사회적협동경제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사회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학점)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동아시아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민사소송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재무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인사행정론 행정책임과윤리 지방자치의 이해 한국민주주의론 국제관계론 북한정치론 비교정치론 정치과정론 가족과 사회 사회변동과 발전 교육사회학 과학기술과환경 공간과환경		
		사회교과논리및논술 (2학점)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응용윤리	한국고대사 한국현대사 고고학개론 한국중세사 한국근대사		
		(총 8학점)	(총 21학점 이상)	(각 전공 택1과목 이상 이수)		(5과목 15학점)
법학	통합 사회	사회교과교육론 (3학점)	사회교육론 (=사회교과교육론)(필수)	한국경제론 사회적협동경제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헌법 I 민사소송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재무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인사행정론 행정책임과윤리 지방자치의 이해 한국민주주의론 국제관계론 북한정치론 비교정치론 정치과정론 가족과 사회 사회변동과 발전 교육사회학 과학기술과환경 공간과환경	일반사회영역의 기본이수과목 중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과목은 일반사회 자 격증의 기본이수과목 이므로 통합사회와 중복인정하지 않음	헌법 I 민사소송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사회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학점)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동아시아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민사소송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재무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인사행정론 행정책임과윤리 지방자치의 이해 한국민주주의론 국제관계론 북한정치론 비교정치론 정치과정론 가족과 사회 사회변동과 발전 교육사회학 과학기술과환경 공간과환경		
		사회교과논리 및 논술 (2학점)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응용윤리	한국고대사 한국현대사 고고학개론 한국중세사 한국근대사		
		(총 8학점)	(총 21학점 이상)	(각 전공 택1과목 이상 이수)		(5과목 15학점)

※ 연계전공인정과목이란 ‘주전공의 전공과목’ 과 ‘연계전공의 전공과목’ 을 중복하여 인정하는 과목을 의미하며, 5과목 15학점에 한함.  
 ※ 연계복수전공이수자 중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이 주전공 교과교육영역과 동일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교과교육영역의 과목 8학점과 기본이수영역과목 중 교육론과목은 5과목 15학점 중복인정학점에 포함되지 않고, 복수전공 이수학점(50학점)에도 포함되지 않음.  
 ※ 위 연계교육과정 이수과목표는 2017학년도 입학대상자 기준임(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일람표를 적용함).

[별표 4]

연계교육과정 이수 과목표(통합사회)(제10조제3항 관련)

주전공	표시 과목	교과교육영역과목	기본이수영역과목	관련전공과목	연계전공 인정과목	
행정학	통합 사회	사회교과교육론 (3학점)	사회교육론 (=사회교과교육론)(필수)	한국경제론 사회적협동경제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헌법 I	일반사회영역의 기본이수과목 중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과목은 일반사회 자격중의 기본이수과목 이므로 통합사회와 중복인정하지 않음	재무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인사행정론 행정책임과윤리 지방자치의 이해 한국민주주의론
		사회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학점)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민사소송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재무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사회교과논리및논술 (2학점)	동아시아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인사소송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재무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인사행정론 행정책임과윤리 지방자치의 이해 한국민주주의론		
			지리학개론 세계지리 한국지리	국제관계론 북한정치론 비교정치론 정치과정론 가족과 사회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응용윤리	사회변동과 발전 교육사회학 과학기술과환경 공간과환경		
			각 영역 2과목이상 (주전공 표시과목 해당분야 제외)	한국고대사 한국현대사 고고학개론 한국중세사 한국근대사		
		(총 8학점)	(총 21학점 이상)	(각 전공 택1과목 이상 이수)	(5과목 15학점)	
국제 관계학	통합 사회	사회교과교육론 (3학점)	사회교육론 (=사회교과교육론)(필수)	한국경제론 사회적협동경제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헌법 I	일반사회영역의 기본이수과목 중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과목은 일반사회 자격중의 기본이수과목 이므로 통합사회와 중복인정하지 않음	한국민주주의론 국제관계론 북한정치론 비교정치론 정치과정론
		사회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학점)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민사소송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재무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사회교과논리 및 논술 (2학점)	동아시아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지리학개론 세계지리 한국지리	인사소송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재무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인사행정론 행정책임과윤리 지방자치의 이해 한국민주주의론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응용윤리	국제관계론 북한정치론 비교정치론 정치과정론 가족과 사회		
			각 영역 2과목이상 (주전공 표시과목 해당분야 제외)	사회변동과 발전 교육사회학 과학기술과환경 공간과환경 한국고대사 한국현대사 고고학개론 한국중세사 한국근대사		
		(총 8학점)	(총 21학점 이상)	(각 전공 택1과목 이상 이수)	(5과목 15학점)	

※ 연계전공인정과목이란 ‘주전공의 전공과목’ 과 ‘연계전공의 전공과목’ 을 중복하여 인정하는 과목을 의미하며, 5과목 15학점에 한함.  
 ※ 연계복수전공이수자 중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이 주전공 교과교육영역과 동일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교과교육영역의 과목 8학점과 기본이수영역과목 중 교육론과목은 5과목 15학점 중복인정학점에 포함되지 않고, 복수전공 이수학점(50학점)에도 포함되지 않음.  
 ※ 위 연계교육과정 이수과목표는 2017학년도 입학대상자 기준임(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일람표를 적용함).

[별표 4]

연계교육과정 이수 과목표(통합사회)(제10조제3항 관련)

주전공	표시 과목	교과교육영역과목	기본이수영역과목	관련전공과목		연계전공 인정과목
사회학	통합 사회	사회교과교육론 (3학점)	사회교육론 (=사회교과교육론)(필수)	한국경제론 사회적협동경제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헌법 I 민사소송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재무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인사행정론 행정책임과윤리 지방자치의 이해 한국민주주의론 국제관계론 북한정치론 비교정치론 정치과정론 가족과 사회 사회변동과 발전 교육사회학 과학기술과환경 공간과환경 한국고대사 한국현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대사	일반사회영역의 기본이수과목 중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과목은 일반사회 자격증의 기본이수과목 이므로 통합사회와 중복인정하지 않음	가족과 사회 사회변동과 발전 교육사회학 과학기술과환경 공간과환경
		사회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학점)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동아시아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지리학개론 세계지리 한국지리			
		사회교과논리및논술 (2학점)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응용윤리			
			각 영역 2과목이상 (주전공 표시과목 해당분야 제외)			
		(총 8학점)	(총 21학점 이상)	(각 전공 택1과목 이상 이수)		(5과목 15학점)
역사학	통합 사회	사회교과교육론 (3학점)	사회교육론 (=사회교과교육론)(필수)	한국경제론 사회적협동경제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헌법 I 민사소송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재무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인사행정론 행정책임과윤리 지방자치의 이해 한국민주주의론 국제관계론 북한정치론 비교정치론 정치과정론 가족과 사회 사회변동과 발전 교육사회학 과학기술과환경 공간과환경 한국고대사 한국현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대사	일반사회영역의 기본이수과목 중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과목은 일반사회 자격증의 기본이수과목 이므로 통합사회와 중복인정하지 않음	한국고대사 한국현대사 고고학개론 한국중세사 한국근대사
		사회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학점)	정치와사회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법학원론 문화와 사회 동아시아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지리학개론 세계지리 한국지리			
		사회교과논리 및 논술 (2학점)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응용윤리			
			각 영역 2과목이상 (주전공 표시과목 해당분야 제외)			
		(총 8학점)	(총 21학점 이상)	(각 전공 택1과목 이상 이수)		(5과목 15학점)

※ 연계전공인정과목이란 ‘주전공의 전공과목’ 과 ‘연계전공의 전공과목’ 을 중복하여 인정하는 과목을 의미하며, 5과목 15학점에 한함.  
 ※ 연계복수전공이수자 중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이 주전공 교과교육영역과 동일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교과교육영역의 과목 8학점과 기본이수영역과목 중 교육론과목은 5과목 15학점 중복인정학점에 포함되지 않고, 복수전공 이수학점(50학점)에도 포함되지 않음.  
 ※ 위 연계교육과정 이수과목표는 2017학년도 입학대상자 기준임(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일람표를 적용함).